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7,019,093	14,910,573
일반회계	412,425,962	12,372,779
특별회계	84,593,131	2,537,794
공기업특별회계	60,196,949	1,805,908
공영개발특별회계	15,541,571	466,247
하수도특별회계	29,323,916	879,7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331,462	459,944
기타특별회계	24,396,182	731,88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25,443	18,763
의료급여특별회계	278,887	8,36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39,400	19,182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117,947	93,538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976,319	89,29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43,267	46,298
수질개선특별회계	14,633,919	439,0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81,000	17,4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35,40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재)